

사회보장국(SSA)

고용인에게보내는잠정비확인통고장(TNC 통고장)

SSA 일선사무국직원(field office staff)에게:EV-STAR 사용하고 POMS RM 10245.005ff 를볼것

고용인의성	고용인의이름
고용인의사회보장번호	고용인이태어난달/태어난연도
SSA 잠정비확인날짜	케이스확인번호
<p>본 TNC <input type="checkbox"/> SSN이일치하지않음: 통고장의이유: 본고용인의이름그리고/혹은생년월일이라고입력한것이사회보장국기록과일치하지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SSN이유효하지않음: E-Verify에입력된사회보장번호가사회보장국기록에따르면유효하지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SSA가미국시민권을확인할수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본고용인에대해선택된시민권지위가사회보장국기록과일치하지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SSN기록이확인되지않습니다, 기타이유: 사회보장국이본고용인의기록에불일치사항을찾았습니다.</p> <p>SSA가정보를처리할수없습니다: 사회보장국이본고용인의기록에불일치사항을찾았습니다.</p>	

고용주를위한지시사항

중요사항
고용인이본 TNC 통고장 2 페이지에서명하고날짜를기입해야합니다.

- 고용인과본TNC통고장을가능한빨리 (사적으로) 검토하십시오.
 - 본TNC통고장의상단에나와있는이름, 사회보장번호그리고태어난달/태어난연도가올바른지확인하십시오. 본정보가옳지않다면, E-Verify 에서본케이스를닫고올바른정보를가지고새케이스를작성하셔야합니다.
중요: 만약고용인이글을읽지못하면, 귀하께서본TNC 통고장을고용인에게읽어주셔야합니다. 고용인이영어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 스페인어, 중국어, 하이티-크리올,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타갈로그, 혹은베트남어를한다면, '필수리소스보기(View Essential Resources)'에나와있는이들언어중하나로된TNC통고장을고용인에게제공해주어야합니다.
 - SSA TNC 에이의틀제기할것인지 2 페이지에표시하라고고용인에게요청하십시오.
 - 고용인에게본 TNC 통고장 2 페이지에서명하고날짜를기입하라고요청한후아래제공된란에서명하고날짜를기입하십시오.
 - 서명되고영어로된본 TNC 통고장을고용인에게한부주고고용인의양식 I-9 에한부를첨부하십시오.
 - E-Verify 에서고용인에게 TNC 를통고했다고표시하고나서'계속(Continue)'을클릭하십시오.
 - 고용인의결정에따라본케이스를의뢰하던지혹은달을것인지에대해서는 E-Verify 에나온지시사항을따르십시오.
- 주의:**고용인이잠정비확인에이의틀제기를하지않기로선택하면, 그를해고시키고 E-Verify 에서본케이스를닫을수있습니다.

나는본고용인이본 '고용인에게보내는잠정비확인SSA통고장'을받았으며본고용인이본TNC통고장 2페이지에나와있는대로결정을했다는것을증명합니다. 나는고용인이본문서를읽고서명했다는것을증명합니다. 내가아는바SSA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틀제기할것인지아닌지에대한고용인의결정이고용인의자유의지에의한것이며고용인이SSA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틀제기하기로결정에관하여고용주로부터어떤강요나압력을받지않았다는것을증명합니다.

나는본TNC통고장의상단에이름이나온고용인이본문서 2페이지에서명한사람이라는것을증명합니다.	
고용주의이름	고용주대표인의이름
날짜	고용주대표인의서명

고용인을위한지시사항 고용인에게보내는잠정비확인통고장(TNC 통고장)을받으신이유

귀하의고용주가 E-Verify 에참여하는데, 이는미연방국토안보부와사회보장국(SSA)에의해관리되는프로그램입니다. E-Verify 는고용자격확인서인양식 I-9 에귀하께서제공하신정보를정부의기록과대조하여귀하께서미국에서일하도록허가를받았는지확인합니다.

양식 I-9 에서 E-Verify 로입력된정보가 SSA 의기록과일치하지않는다고 E-Verify 가지적하였기때문에귀하께서본 TNC 통고장을받으셨습니다. 이는 SSA 잠정비확인혹은 TNC 로알려져있습니다. 귀하께서고용주에게잘못된정보를주셨다거나귀하께서미국에서일할허가가없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SSA 잠정비확인다음과같은경우에일어날수있습니다:

- 귀하께서사회보장번호를받으신이후귀하의시민권혹은이민지위가변경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SSA 에이름변경을보고하지않았습니다.
- 귀하의이름, 사회보장번호혹은생년월일이 SSA 기록에잘못기록되었습니다.
- SSA 의기록과다른종류의불일치가있습니다.
- 귀하의고용주가 E-Verify 에서귀하의정보를올바르게입력하지않았습니다.

중요사항

본 TNC 통고장은귀하께서일하시도록허가받지않았다거나양식 I-9 을위해귀하께서제시한문서(들)에올바르지않은 정보가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SSA 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기로선택하시면, SSA 일선사무국을방문하셔야합니다. 그리고나면 SSA 는적절할경우그기록을검토하여갱신혹은수정할것입니다. 본 SSA 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결정하시면, 귀하의고용주가귀하를해고할수있습니다.

귀하가하셔야할일

본 TNC 통고장의첫페이지에나와있는귀하의이름, 사회보장번호, 태어난달/태어난연도가올바른지확인하십시오. 올바르지않은정보가있을경우즉시고용주에게말씀하십시오. 귀하의정보가올바르다면, SSA 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할것인지결정하시고본결정을고용주에게알려야합니다.

SSA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시면(조치를취함),SSA일선사무국을방문하셔야합니다. 귀하의고용주가E-Verify 를통해귀하의케이스를SSA에보내고귀하에게의뢰편지를줄것입니다. 의뢰편지에는SSA일선사무국어떻게찾고어떤문서를가지고오셔야하는지에대한설명있습니다. 귀하의고용주가E-Verify 에서귀하의케이스를의뢰하는날짜로부터연방정부근무일기준으로 8 일안에SSA일선사무국을방문해야합니다. 어떤경우에는SSA TNC 를받는미국시민이TNC를해결하기위해DHS에연락할수있습니다.

귀하께서 TNC 에이의제기하기로결정한것을근거로귀하의고용주가귀하께부정적인조치를취하거나해고시킬수없다는것을아시는것이중요합니다. 본 TNC 통고장다음페이지에귀하의권리가개략적으로나와있습니다.

귀하께서 SSA 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지않으시면(조치를취하지않음), TNC 를해결할수있는기회를포기하는선택을하시는겁니다. 귀하의케이스는자동적으로최종비확인판정이되고그의미는귀하의고용주가귀하를해고할수있다는것입니다.

중요사항

귀하의권리를아십시오: 귀하의법적권리에대한중요한정보가나와있는다음페이지를읽으십시오.

나는선택한다: (하나만체크)

SSA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제기할것을선택한다.나는SSA의뢰편지에나와있는날짜로부터연방정부근무일기준으로 8일안에서사회보장국일선사무국을방문해야함을이해한다.

SSA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제기안할것을선택한다.나는SSA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제기할기회를포기하기로선택한다.

나는 고용주가 나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고용인의 서명	날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E-Verify에 888-897-7781 번(청각장애인용: 877-875-6028)으로 연락하거나 E-Verify@dhs.gov로 이메일하십시오. 이민 관련 부당 고용 관행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이민 관련 부당 고용 관행에 대한 변호사 사무실(Office of Counsel for Immigration-Related Unfair Employment Practices)에 800-255-7688 번 (청각장애인용: 1-800-237-2515)으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 고용주는 E-Verify 를 선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업 지원자를 사전 심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Verify 는 출신 국가, 시민권 혹은 이민 지위에 무관하게 모든 신규 고용인들에 대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현재 연방 계약서에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연방 취득 규정) E-Verify 조항을 구비한 연방 계약업자가 아닌 이상 기존 고용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E-Verify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E-Verify 참여 통고서' 와 '일할 권리 포스터(들)'을 명확하게 붙여보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용주는 잠정 비확인(TNC) 판정을 받는 고용인에게 '고용인에게 보내는 잠정 비확인 통고장' 한 부를 주어야 합니다. TNC 통고장에는 어떻게 TNC 에이의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인의 TNC 에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결정에 근거해서 혹은 고용인의 케이스가 아직 미연방 국토안보부(DHS) 혹은 사회보장국(SSA)에서 미결종이라고 해서 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데이에 대해서는, 정직, 급여 및 직업 훈련 보류, 시작 날짜 연기 혹은 기타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 만약 고용인이 잠정 비확인 판정에 에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DHS 혹은 SSA 에로 의뢰 편지를 주어야 합니다. 의뢰 편지에는 고용인을 위한 지시 사항 및 부서 연락 정보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고용인이 잠정 비확인 판정에 에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SSA 일선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DHS 에 연락하도록 E-Verify 에서 케이스가 의뢰된 날짜로부터 연방 정부 근무 일기 기준으로 8 일을 주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최종 비확인 판정을 받은 후에만, 혹은 고용인이 잠정 비확인 판정에 에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고용인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고용 허가만료된 기존 고용인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E-Verify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고용 자격 확인서 인양식 I-9 섹션 3 를 작성하거나 새 양식 I-9 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행 및 프로그램 규칙을 포함하여 E-Verify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E-Verify 웹사이트 www.dhs.gov/E-Verify 를 방문하십시오.

위반 사항을 보고하십시오

귀하께서 귀하의 고용주가 E-Verify 규칙을 위반했거나 귀하를 차별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믿으시는 경우,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용주 부당 사용,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 및 일반적 E-Verify 불만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E-Verify 고용인 핫라인에 888-897-7781 번으로(청각장애인용: 877-875-6028) 연락하시거나 E-Verify@dhs.gov 로 이메일하십시오.

시민권, 이민 지위, 혹은 출신 국가에 근거한 고용 차별, 혹은 기타 E-Verify 부당 사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공민권국, 이민 관련 부당 고용 관행에 대한 특별 변호사 사무실(Office of Special Counsel for Immigration Related Unfair Employment Practices)에 800-255-7688 (청각장애인용 TTY: 800-237-2515)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특별 변호사 사무실 웹사이트인 www.justice.gov/crt/osc 를 방문하십시오.